

2018 제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공모

I. 추진개요

1. 추진목적

- 지역 문화예술기관·단체에서 아동·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·지원
- 또래·가족과 문화예술을 통해 체험·탐구를 통해 공감·소통할 수 있는 건전 여가문화 조성
- ※ 주요키워드 :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, 아동·청소년 및 가족(학부모), 문화예술 소양 함양, 또래·가족 간 소통, 건전 여가문화 조성
- 공립 문화예술기관·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
- 소외계층 대상의 감성·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격차 해소

2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18. 1월 ~ 12월(교육 운영기간 `18. 4월 ~ 11월)
- 지원대상 :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문화예술 기관·단체
- 교육대상 : 아동·청소년 및 아동·청소년을 포함한 가족
- 교육방법 :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성·감성 함양을 위하여 체험, 강의, 감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
- 사업예산 : 702백만원(국비 351, 지방비 351)
- 추진체계
 - 주최 : 문화체육관광부, 제주특별자치도
 - 주관 : 제주문화예술재단(문화예술교육팀)
 - 협력 :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

II. 세부 추진계획

1. 사업 구성 계획

- 교육대상 : 아동·청소년 및 아동·청소년을 포함한 가족
 -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결혼이민자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전체 참여자의 10% 이상 모집할 것
- 교육방식 :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성·감성 함양을 위하여 체험, 강의, 감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
 - ※ 1회성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 지원 지양
- 교육운영기간 : '18. 3월 3주 ~ 11월 4주

<기획 공모사업>

- 학기별, 연간 프로그램 등 학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
- 연간 30주차 내외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, **반드시 방학프로그램 운영 (주중 운영 가능)**
 - ※ 방학프로그램은 ○○캠프, ○○학교 등으로 3박4일 내외 운영 기본으로 한 캠프 형식 운영

<일반 공모사업>

- 학기별, 연간 프로그램 등 학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
- 연간 30주차 내외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, 사업유형 및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
 - ※ 토요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, 주말(토, 일 중) 운영가능, 지역센터 협의 필수
 - ※ 15주차×2개 프로그램, 10주차×3개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

- 교육강사 : 문화예술교육사 및 현장 예술인 등
 - ※ 국악, 연극, 디자인, 사진, 무용, 음악, 미술, 공예, 만화·애니메이션, 영화 등 10개 분야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해당 분야 문화예술교육사가 활동하도록 권장
- 교육장소 : 학교 밖, 지역 내 박물관·미술관·도서관·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(주민센터, 마을회관 등)

<참고사항> 교육장소 관련

-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 여건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공공의 안정적 시설 확보 (학원, 가정집 등 민간보유시설 불가)
- 교육장소 및 현장에 대한 지역센터의 사전 현장점검 및 지속적 관리 필수
- 초·중·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설 내에서 운영 불가

- 교육장르 : 연극, 음악, 전통, 무용, 시각, 통합 등 문화예술 장르 및 구성에 국한되지 않으며, 교육대상 파악을 통한 단체의 고유한 특성 및 전문성·자원을 적극 활용
- 참여자 모집 방법 : 지역 내 시청, 학교, 아동센터, 청소년센터 등과 연계한 참여자 모집 독려 (기수 별 최소 12명 이상)

○ 사업운영 관리

- 참여자의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(보험가입 등)
- 모든 홍보·인쇄물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BI 적극 활용
- 사업 운영 관련 정보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누리집(<http://toyo.arte.or.kr>)에 등록·관리

○ 프로그램 운영 주체 선정·지원

-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본 방향과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 기관 혹은 단체 선정·지원
- 지역 내 공립 예술기관·단체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수혜자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
- 단, 예술단체를 선정·지원할 경우, 교육공간의 기본 준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역할분담 적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확정

2. 세부추진사항

□ 공모

- 신청자격 :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춘 제주 지역에 활동 연고를 둔 문화예술(교육) 단체 및 기관(공간)으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 및 법인

※ 공간을 보유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,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운영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, 협력기관과의 역할을 제시하여야 함. (협력확인서 제출)

- 지원 신청 시 고려사항

- 17년 참여 시와 동일 프로그램으로 지원 시, 교육과정 및 내용의 전년대비 개선 사항 제시 필수, 전년도 운영 단체의 경우 참여자 신규모집 필수
- 워크숍, 컨설팅 등 각종 네트워킹 활동에 의무참여(사업 주체가 단체인 경우 협력기관 담당자 포함, 후년도 사업 참여시 협조도 반영)
- 회계감사 의무화에 따라 단체별 지원금 규모에 맞는 회계수수료 책정 필수
- 선정단체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(5월 넷째주 토요일) 중 기존 프로그램 참여자 및 지인, 가족, 주민 등 대상의 개방형 프로그램 운영

※ 사업예산에 공동사업비 100만원 책정 필수

○ 세부유형

공모사업		
공모 유형	일반공모	기획공모
목적	또래·가족과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체험·탐구·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, 소통할 수 있는 건전 여가문화 조성	· 가족, 세대 간 통합 · 가족 간의 갈등을 문화예술로 치유하고 소통의 장을 제공
대상	· 아동·청소년 · 아동·청소년을 포함한 가족	
내용	· 예술, 인문 등 문화예술 소양 함양 교육 프로그램 · 지역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· 문화예술 매개로 또래 간, 가족 간의 소통 프로그램 · 문화예술 소질 개발, 진로탐색 프로그램	‘여행’을 주제로 한 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
		운영가이드 · 프로그램 운영 방식 및 횟수는 기획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· 반드시 방학 프로그램 포함(주중 운영 가능) · 방학프로그램은 캠프 방식 활용(도외여행 가능) · 사업 정산 시 프로그램 아카이빙(사진, 영상 등) 자료 제출 필수
지원 방향	· 기존 주말 문화 프로그램 및 일회성 체험, 단순 강의, 실기 교육 지양 ·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·인성 함양, 또래·세대 간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(예술에 대한 쉬운 접근과 일상화가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)	
지원 규모	사업별 1,500만원 ~ 5,000만원	

□ 심의

○ 심의 절차 및 선정



구분	진행내용
1차 서류심사	- 심사대상 : 공모 참여 단체 - 일정(예정) : 2018. 2월말 - 심사위원 구성을 통한 서류 심사
2차 인터뷰심사	- 심사대상 : 공모 참여 단체 - 심사내용 : 사업 추진 적합성 확인 - 심사방법 : 사업 소개(5분)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(15분) - 일정(예정) : 2018. 2월말 ※ 서류심사에 따른 과락 없이 공모단체 전체 인터뷰심사 진행, 서류 및 인터뷰 심사 합산 점수로 선정
기획워크숍	- 참여대상 : 선정단체 - 진행내용 : 확정예산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- 일정(예정) : 2017. 2월말 ※ 컨설팅을 통하여 확정 사업계획서 보완하여 교부 신청, 미보완 시 선정 불가
※ 일관성 있는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1·2차 심사위원 및 기획워크숍 컨설턴트 일원화	

○ 심의 시 고려사항

-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본 방향과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 기관 혹은 단체 선정·지원
- 단, 예술단체를 선정·지원할 경우 교육공간의 기본 준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및 역할 분담 적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확정
-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규단체, 문화예술교육가·활동가·기획가 선정

<참고사항> 사업 운영 주체 선정 기준

-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취지 이해, 프로그램 운영 기본방향 적용 여부
- 프로그램의 우수성
 - 참여 대상의 연령대, 구성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여부
 - 참여자 지속 관리를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구성 여부
 - 기존 운영되던 프로그램이라면,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의 전환 혹은 차별화 고려 여부
- 참여자 모집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 여부
- 주5일제 이후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고려, 「꿈다락 토요문화학교」의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의지 여부
-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 여부

○ 세부 심의기준

심의영역	세부영역	심의지표	배점
추진 역량	전문성	- 문화예술교육 주요 활동 실적 - 참여인력의 전문성 - 협력네트워크 추진 능력	25
추진 계획	콘텐츠	- 프로그램 콘텐츠의 우수성 -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가 - 참여자 지속 관리를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구성여부	25
	교육 대상	- 교육대상의 특성 및 수요의 반영도 - 참여자 모집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 여부 -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 등 관리 방안 수립 여부	25
	교육 운영	-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 - 교육공간의 안전관리계획, 교육 활동 공간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-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·의지 여부 - 전년도와 동일 프로그램인 경우 교육과정 및 내용의 전년대비 개선사항,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의 전환 혹은 차별화 여부	25
합 계			100

※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심의위원 회의에 따라 배점은 일부 수정될 수 있음

○ 선정방법 및 선정 단체 및 지원액

- 심사위원 점수로 합산에 의하여 결정
- 25개 내외의 지원 단체 선정
- 계획의 적절성에 따라 1개 단체 당 1,500만원 ~ 5,000만원 지원

□ 사업 공모 및 접수

- 제주문화예술재단(www.jfac.kr),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(www.artreach.or.kr) 홈페이지에서 지정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- 공모기간 : 2018. 1. 29.(월) ~ 2018. 2. 12.(월)
- 접수기간 : 2018. 1. 30.(화) ~ 2018. 2. 12.(월) 18:00까지 ※ 주말, 공휴일 제외
- 사업설명회 : 2018. 1. 30.(화) 16:00 /제주문화예술재단 B1 회의실(예정)
- 제출방법 :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※우편접수 시 2. 12.(월) 도착분에 한함
- 접수처 : (63196) 제주도 동광로 51 8층

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꿈다락 담당자 앞

○ 제출서류

제출서류	부수	제출양식	제출방법
-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기획자 이력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※ 단체인 경우, 협력기관 협력 확인서	4부	지정양식 (홈페이지 참고)	- 재단방문 및 우편접수 ※ 신청서 파일 별도 이메일 송부 (jjart8618@hanmail.net)
- 단체등록증 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등)	1부	사본	재단방문 및 등기우편접수
- 주요활동증빙자료	2부	사본	재단방문 및 등기우편접수

- 문의 :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교육팀 ☎064-800-9171

<붙임>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산편성 기준

목	세	세세목	내 용	비 고											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기획자 인건비	○ 교육프로그램 회차당 기본 50,000원,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,000원 지급 ※1회 최대 12만원 - 기획자 인건비는, 효율적인 사업관리(회계, 기록 등)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-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 (중복 지급 불가) ※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	공통 사항											
		강사비	○ 주강사 : 시간당 43,000원 / 보조강사 : 시간당 22,000원 -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※ 캠프,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-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- 지급내역서(인적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, 교육/강연 일자 및 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	공통 사항											
		강사 교통비	○ 강사의 육지 - 제주 간 항공비 실비 지급 ※ 항공권 등급은 이코노미만 가능 ☞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	공통 사항											
		초빙 강사료 (연수 등)	○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 - 예시 :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,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○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강사료</td> <td>1등급*</td> <td>2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2등급*</td> <td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3등급*</td> <td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1등급 : 대학총.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	구 분	등급	지급금액	강사료	1등급*	250,000/시간	2등급*	150,000/시간	3등급*	100,000/시간	공통 사항	
		구 분	등급	지급금액											
강사료	1등급*	250,000/시간													
	2등급*	150,000/시간													
	3등급*	100,000/시간													
행사 진행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행사료</td> <td>1등급*</td> <td>20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2등급*</td> <td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3등급*</td> <td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구 분	등급	지급금액	행사료	1등급*	200,000/시간	2등급*	150,000/시간	3등급*	100,000/시간	공통 사항			
구 분	등급	지급금액													
행사료	1등급*	200,000/시간													
	2등급*	150,000/시간													
	3등급*	100,000/시간													
일반 수용비 (01)	전문가 활용비 (학술 행사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학술 행사비</td> <td>1등급*</td> <td>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</td> <td rowspan="3">3시간 이내일 경우 (*) 금액 적용</td> </tr> <tr> <td>2등급*</td> <td>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</td> </tr> <tr> <td>3등급*</td> <td>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학술 행사비	1등급*	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3시간 이내일 경우 (*) 금액 적용	2등급*	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3등급*	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	공통 사항
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											
학술 행사비	1등급*	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3시간 이내일 경우 (*) 금액 적용												
	2등급*	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												
	3등급*	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													

운영비
(210)

	* 1~3등급은 강사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
심사 및 자문료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심사료 및 자문료</td> <td>1등급</td> <td rowspan="2">200,000원</td> <td rowspan="3">. 2시간 기준 . 2시간 이상: 150% . 5시간 이상: 200% . 국외: 실소요액</td> </tr> <tr> <td>2등급</td> </tr> <tr> <td>3등급</td> <td>1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심사료 및 자문료	1등급	200,000원	. 2시간 기준 . 2시간 이상: 150% . 5시간 이상: 200% . 국외: 실소요액	2등급	3등급	100,000원	공통 사항										
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
심사료 및 자문료	1등급	200,000원	. 2시간 기준 . 2시간 이상: 150% . 5시간 이상: 200% . 국외: 실소요액																							
	2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
	3등급	1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자문료 지급 관련 -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-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* 1~3등급은 강사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
번역료 및 감수료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 colspan="3"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번역료</td> <td colspan="3">○외국어 ⇒ 한글 : 3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○한글 ⇒ 외국어(영,일) : 60,000/A4 1매(800자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○외국어 ⇒ 기타외국어 : 6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○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/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</td> </tr> <tr> <td>감수료</td> <td colspan="3">○필요시 번역료의 20%반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구 분	지급금액			번역료	○외국어 ⇒ 한글 : 3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			○한글 ⇒ 외국어(영,일) : 60,000/A4 1매(800자)			○외국어 ⇒ 기타외국어 : 6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			○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/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			감수료	○필요시 번역료의 20%반영			공통 사항
	구 분	지급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
	번역료	○외국어 ⇒ 한글 : 3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																								
		○한글 ⇒ 외국어(영,일) : 60,000/A4 1매(800자)																								
○외국어 ⇒ 기타외국어 : 6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/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수료	○필요시 번역료의 20%반영																									
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편곡</td> <td>1등급</td> <td>500,000원/곡</td> <td rowspan="3">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 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 * 재편곡, 재편성, 재구성인 경우 원 편곡의 1/2 만 지급</td> </tr> <tr> <td>2등급</td> <td>400,000원/곡</td> </tr> <tr> <td>3등급</td> <td>300,000원/곡</td> </tr> <tr> <td>작곡</td> <td colspan="3">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</td> </tr> <tr> <td>감수료</td> <td>등급무관</td> <td>50,000원</td> <td>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함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편곡	1등급	500,000원/곡	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 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 * 재편곡, 재편성, 재구성인 경우 원 편곡의 1/2 만 지급	2등급	400,000원/곡	3등급	300,000원/곡	작곡	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			감수료	등급무관	50,000원	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함.	공통 사항	
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
	편곡	1등급	500,000원/곡	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 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 * 재편곡, 재편성, 재구성인 경우 원 편곡의 1/2 만 지급																						
		2등급	400,000원/곡																							
		3등급	300,000원/곡																							
작곡	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																									
감수료	등급무관	50,000원	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함.																							
* 1등급 :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써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: 국내 시·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: 국내 음악대학,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진행비	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, 현장주차비 등 *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(240-01)로 책정·활용				공통 사항																					
안내 홍보물 제작비	○ 팸플렛,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○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,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*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				공통 사항																					
인쇄비	○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○ 조달청 기준 참고				공통 사항																					
회계 검사 수수료	○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(부가세 포함) ○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(수수료)로 포함				공통 사항																					
	기준금액		수수료	기준 금액		수수료																				
	1천만원 미만		282,000	8천만원 이상~9천만원 미만		632,000																				
	1천만원 이상~3천만원 미만		282,000	9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		674,000																				

운영비
(210)

일반
수용비
(01)
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3천만원 이상~4천만원 미만</td> <td>336,000</td> <td>1억원 이상~2억원 미만</td> <td>848,000</td> </tr> <tr> <td>4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</td> <td>365,000</td> <td>2억원 이상~3억원 미만</td> <td>894,000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상~6천만원 미만</td> <td>505,000</td> <td>3억원 이상~4억원 미만</td> <td>940,000</td> </tr> <tr> <td>6천만원 이상~7천만원 미만</td> <td>547,000</td> <td>4억원 이상~5억원 미만</td> <td>985,000</td> </tr> <tr> <td>7천만원 이상~8천만원 미만</td> <td>590,000</td> <td>5억원 이상~6억원 미만</td> <td>1,147,000</td> </tr> </table>				3천만원 이상~4천만원 미만	336,000	1억원 이상~2억원 미만	848,000	4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	365,000	2억원 이상~3억원 미만	894,000	5천만원 이상~6천만원 미만	505,000	3억원 이상~4억원 미만	940,000	6천만원 이상~7천만원 미만	547,000	4억원 이상~5억원 미만	985,000	7천만원 이상~8천만원 미만	590,000	5억원 이상~6억원 미만	1,147,000		
3천만원 이상~4천만원 미만	336,000	1억원 이상~2억원 미만	848,000																								
4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	365,000	2억원 이상~3억원 미만	894,000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상~6천만원 미만	505,000	3억원 이상~4억원 미만	940,000																								
6천만원 이상~7천만원 미만	547,000	4억원 이상~5억원 미만	985,000																								
7천만원 이상~8천만원 미만	590,000	5억원 이상~6억원 미만	1,147,000																								
공공 요금 및 제세 (02)	공공 요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, 택배발송, 커서비스, 행사 보험료 등 ○ 우편통신요금 등 				공통 사항																					
임차비 (07)	차량/ 장소/ 기자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량 임차 : 실비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,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- 특히, 프로그램 운영 기관·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○ 장소 임차 :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매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,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비를 인정. 1회(3시간 기준)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 (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) -문화기반시설 :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예회관, 지방문화원,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○ 기자재 임차 :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				공통 사항																					
위탁 사업비 (15)	외주 업체 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사 대행업체 용역, 디자인 용역, 영상물 제작 용역(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 작업 제외), 홍보(프로모션) 대행업체 용역, 구매(제작용역)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비교견적 시행 				공통 사항																					
업무 활동비 (240)	사업 추진비 (01)	회의 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과비 기준단가 : 3,000원 / 1인 1회 기준 ○ 회의식비 기준단가 : 20,000원 / 1인 1식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. ※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○ 산출예시 (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 과 비 : 3,000원×100명×2식=1600,000원 - 회의식비 : 20,000원x100명x2식=4,000,000원 			공통 사항																					
인건비 (110)	일용 임금 (04)	보조 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기용역비(일용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대 1일 8시간, 61,000원 (1인) ※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,530원 적용 시간×최저임금(7,530원), 백원단위 올림 ex)3시간×7,530=22,590 → 23,000원 ※ 외부숙박인 경우 90,000원 ex) 1박2일 = 90,000원+61,000(8시간기준) ※ 연간 30일 이내 활용 			공통 사항																					